



국 토 교 통 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관련 질의 및 의견 제출에 대한 회신

1. 귀 연합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, 한정연 제261(2024.10.7)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.

2. 질의관련

가. 질의내용

- 전자장치진단검사 관련 개정 취지 등 상세한 해석 요청

나. 회신내용

- 금번 개정안은 고전원배터리 등의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전기자동차·수소전기자동차·하이브리드자동차의 고전원배터리 등에 대한 검사기준을 강화하고 내실화하기 위한 조치로,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**(전자장치진단기 사양 강화)** 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(별표18) 중 전자장치진단기는 원동기부분전자제어장치, 새시(동력전달장치 포함), 에어백(Air Bag), 고전원전기장치, 안전운전 보조장치(저소음자동차의 경고음발생장치 포함)에 관련된 전자제어장치를 진단할 수 있도록 사양을 강화하여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지정정비사업자는 강화된 기준에 맞게 고전원전기장치 등을 진단할 수 있는 전자장치진단기를 갖추어야 합니다.
- **(자동차검사 생략 기준 강화)** 자동차검사 일반기준 및 방법(별표15)의 전자장치진단검사 생략 기준을 자동차에 전자제어장치가 없거나, 전자장치진단기로 전자제어장치의 항목별 진단을 실시한 후에도 진단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하여, 사양이 강화된 전자장치진단기로 전자제어장치의 항목별 진단을 실시하였음에도 검사 차량의 이상, 통신장애 등 부득이하게 진단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- ☞ 즉,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정정비사업자는 개정안의 사양에 맞도록 전자장치진단기를 교체하거나 성능을 업데이트하여 진단검사를 필수로 실시해야 하고, 전자장치진단검사가 가능한 차량임에도 진단검사를 생략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 또는 시설·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.

[붙임 2]

3. 건의관련

가. 건의내용

- 검사 매뉴얼 제공, 전자장치진단기의 성능기준 마련 및 인증제도 도입

나. 회신내용

- **(검사 매뉴얼 제공)** 전자장치진단검사 관련 매뉴얼은 향후에 검사원 교육 등(동영상 제작·배포)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.
- **(전자장치진단기의 성능기준 마련 및 인증제도 도입)** 고전원배터리에 대한 검사 내실화 등 개정 취지에 맞게 전자장치진단기는 모든 차종에 대한 진단이 가능하여야 할 것이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KADIS도 이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으나, 먼저 데이터 분석 및 업계 의견 청취 등을 거친 후 전자장치진단기에 대한 정밀도 검사기준 마련 등을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4. 아울러, 금번 개정안이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 포함되는 등 전기차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제도 도입이 시급하여 개정안의 수정·시행시기 연장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, **귀 연합회에서는 제도 시행전에 지정정비사업자가 제도 취지에 맞는 전자장치진단기를 모두 갖추고, 기술인력이 고전원전기장치 등 취급자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** 향후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정부합동점검 및 지자체 지도점검 시 지정기준 미달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국토교통부장관



수신자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, (사)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

주무관

유정은

행정사무관

김선희

자동차운행보 전결 2024. 10. 15.

협과장

배소명

협조자

시행 자동차운행보험과-8385 (2024. 10. 15.)

접수 M00011782715

(2024. 10. 16.)

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(어진동)

/ <http://www.molit.go.kr>

전화번호 044-201-3859

팩스번호 044-201-5587

/ ojgoad37@molit.go.kr

/ 비공개(5)

[붙임3]



국토교통부

국 토 교 통 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전기차의 고전원배터리 검사강화 관련 협조 요청

1. 귀 연합회의 발전을 기원하며, 한정연 제261(2024.10.7)호 및 자동차운영보험과-8385(2024.10.15)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.
2. 금년 우리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에 포함된 전기차의 배터리 검사강화와 관련하여 자동차제작자등의 BMS 정보 미제공 등에 따른 검사의 실효성을 지적하면서 전 차종에 대한 검사가 가능하도록 KADIS 진단기 개발을 완료하고 범용 진단기 보급 저조에 따른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.
3. 이와 관련하여,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배터리 검사강화가 적용되기 전까지 수입차를 포함한 전 차종의 BMS 정보를 모두 확보하여 빈틈없는 검사가 진행되도록 KADIS를 개발할 예정('24년 9월말 기준 승용차 검사대상 중 99.7%가 BMS 검사 가능)이며, 우리부는 지정정비사업자도 이에 맞춰 모든 차종에 대한 배터리 정밀검사가 가능한 진단기를 갖추도록 할 예정입니다.
4. 또한, 향후 배터리 검사강화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민간검사소 상시 모니터링, 정 부합동점검, 지자체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·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「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」 제5조 및 별표 제4호카목에 따라 사업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 처분이 있을 수 있음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